

광주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나204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나2040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합512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은태

변론 종결2024. 10. 2.

판결 선고2024. 11. 20.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합51286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사이의 별지 1 내지 3 목록 각 기재 건설자재에 대하여 2021. 1. 4., 2021. 6. 30., 2022. 7. 25. 각 체결된 매매계약을 3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패소한 위 제1심 공동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4행 "원고 A"를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제1심판결문의 각 "원고 A"를 "A"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2행의 "원고 B"을 "원고"로 고치고, 이하의 각 "원고 B"을 "원고"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1행의 "원고들"을 "A와 원고"로 고치고, 이하의 각 "원고들"을 "A와 원고"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3행의 "1,106,63988,600원"을 "1,106,639,6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쪽 7, 8행을 "3) 구체적 판단"으로, 14행 "1,106,63988,600원"을 "1,106,639,60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2행 각주 2)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3행부터 제13쪽 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건설자재들이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원고는, ① D가 K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K로부터 건설자재(이하 'K 공급 건설자재들'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D는 K 공급 건설자재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설령 피고의 소유권유보부매매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D는 2014.부터 K 이외에도 M 주식회사 등 수많은 회사로부터 종류물인 건설자재를 매입 및 임차하여 왔고, 사해행위로 특정된 매매로 인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들을 인도할 당시 K 공급 건설자재들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인도하였는바, 이 사건 건설자재들은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 1,006,424,000원에 상응하는 건설자재들 및 K 이외의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던 건설자재들이 혼동되어 있으므로, D가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건설자재들은 D의 소유로서 그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설자재는 K의 소유일 뿐,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 '매매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D는 K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설자재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K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인 D는 이 사건 건설자재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실제 작성일과 달리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K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제로 K이 이 사건 건설자재들을 포함한 건설자재들을 D에게 매도하였고, D가 K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건설자재대금 일부를 지급한 점, 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D는 K에게 2021. 12.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자재대금 1,964,148,44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자금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 대한 임대료 65,380,392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D와 피고, K(피고와 K의 실제 운영자는 소외 L으로 동일한 사람이다)은 협의 하에 D가 이 사건 건설자재들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는 방식으로 반환하는 대신, D와 피고 사이에 위 미지급 자재대금 및 임대료에 상응하는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D, 피고, K 사이의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재 반환이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를 매도하거나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에 D가 이 사건 건설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이상 대물변제는 성립될 수 없고, D가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들을 인도한 다음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2021. 1. 4. 자, 2021. 6. 30. 자, 2022. 7. 25. 자로 각 자재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그 무렵 D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D가 피고에게 인도한 이 사건 건설자재들에 D 소유의 자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K이 공급한 자재는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D가 K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자재는 472,613,400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2014.경부터 2015.경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서 연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설자재들 중 D 소유의 다른 자재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2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인도받은 자재 중 K 소유의 자재가 아님에도 입고된 것들을 선별한 다음 2020.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를 D에게 반환하였는바, D 소유의 자재들이 피고에게 인도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㉔ 피고는, K이 D에게 약 38만 9천여 개의 건설자재를 공급했는데, D는 최초 피고에게 27만 4천여 개를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가 과반입된 자재들을 다시 D에게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22만 7천여 개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을 제5, 10,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결국 D는 K 공급 자재들 중 약 60% 정도만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40% 가량은 유실되거나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K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자재대금은 약 30억 원 중 10억 원(30%)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설자재들이 D가 기지급한 자재대금에 상응하는 D 소유의 자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설자재들이 원고 소유의 자재로서 원고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건설자재들이 전부 K 공급 건설자재들이더라도,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등을 들어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담보물권을 취득한 것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K이 이 사건 건설자재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설자재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의 도산절차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환취권이 아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매수인인 D의 도산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앞서 본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리에 따라 여전히 매수인인 D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건설자재들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K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이 사건 건설자재들의 소유권이 K에게 있어서 이 사건 건설자재들을 D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써 채무자인 D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시켰다거나 이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당시 D의 무자력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었을 당시 D의 적극재산은 2,322,545,720원(= 건설자재 2,162,534,720원 + 부동산 160,011,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3,084,315,954원(= K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1,964,148,440원 + N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149,344,800원 + 조세채무 261,892,920원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340,180,473원 + 자재 임차료 채무 324,479,064원 + O은행에 대한 채무 44,270,257원)이었으므로,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24, 27호증의 기재, 2023. 6. 9. 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2023. 6. 16. 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채무초과 여부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D가 보유한 자재들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2,322,545,72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제1심에서 D가 피고에게 매도한 자재의 가액이 41억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했던 점¹⁾ 이나, 당심에서 D가 K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 이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약 4억 7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35억 원 상당의 자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²⁾ 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소극재산 중 조세채무, O은행에 대한 채무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채무의 발생시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당시 위 채무의 발생여부 및 액수 등을 알 수 없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액수도 사해행위 당시의 금액이 아닌 2024. 9. 2.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의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D의 2021. 12. 31. 자 결산 재무제표에는 자산총계가 3,962,452,154원, 부채총계가 3,452,679,617원이고, 이에 따른 2021년 당기순이익은 197,649,384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당시 D의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인 2021. 1.경부터 2022. 7.경 무렵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경준

판사김수양

1) 2023. 9.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7쪽

2) 2024. 2. 14. 자 준비서면 제7쪽